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5회 제2차 정례회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9.(수)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
- 제안일 : 2023. 11. 17.
- 회부일 : 2023. 11. 20. (의안번호 : 23-171)

2. 제안이유

-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다양한 연령 및 계층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학교의 범위 추가(안 제2조)
- 나. 장학생 지급대상 추가(안 제6조)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입법예고 : 2023. 10. 5. ~ 10. 25.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평생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다양한 연령 및 계층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2조 정의 중 제2호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추가하고
 - 안 제6조 장학금 지급대상 중 제1항제2호중 학교형태의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 조례안의 제안배경 및 취지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교육과정 및 시설, 설비 등이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와 유사한 시설로서 경제적 이유 등 개인사정으로 중,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근로청소년, 성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하고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란 교육감에게 등록한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중 일정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경우 중,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장학재단 설립취지와 부합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위반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 다만 2011년도 경남교육청을 시작으로 시·도 교육청에서도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에게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으므로 서울시 교육청과 협의하여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수혜를 받아 교육복지 실현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팀장
교육정책과	김정해 (8970)	임진아 (895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
항에 해당하지 않음.

3. 미첨부 사유

비용추계 대상 아님

4. 작성자 : 복지동행국 교육정책과 신희영 (☎ 3153-8952)

참고자료

1. 관련법령

평생교육법

제31조(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중 일정 기준 이상의 요건을 갖춘 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부당집행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 3. 27.>

2. 서울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 초등 1교, 인문 중·고 4교, 특성화 중·고 4교, 특성화예술고 1교

초등 학교	인문중·고등학교	특성화중·고등학교	특성화예술 고등학교
서현초등학교	성지중·고등학교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진형중·고등학교 청암중·고등학교	신동신중· 정보산업고등학교 서울자동차고등학교 정암미용고등학교 청량정보고등학교	한림중실업 연예예술고등 학교

출처 : 서울시교육청(2023년 4월 기준)